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①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신고절차 신설

구분	주요 내용
신고대상	□ 「농지법」 제41조의3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신고방법	□ 농지개량 신고서(별지 제57호의2 서식)를 관할 인·허가기관에 제출 ※ 농지개량 신고서 관련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기간, 개량 농지 위치, 개량 높이·깊이·면적·흙 반입/반출량/반출처 등이 포함된 문서 2. 농지 소유권 입증이 가능한 서류(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 3.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 4. 피해방지 계획서(인근 농업경영, 시설 등의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
검토사항 (인·허가기관)	□ 「농지법」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기준 준수 여부 □ 농지개량행위에 따른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수립 여부
처리기간	□ 15일 이내에 농지개량 신고증 배부(검토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제출서류 반려)
제재사항	□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농지법」 제60조제2호) ○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여 가능(「농지법」 제42조 및 제63조)
처리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농지개량 신고서 및 관련 서류</div> <span>→</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해당 지자체 제출</div> <span>→</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토</div> <span>→</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농지개량 신고증 (신고인에게 배부)</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신고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지자체</div> </div>
예외사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농지법」 제41조의3)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 기타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및 성토기준 등 구체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공통 사항	<input type="checkbox"/>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li> <li>○ 토양오염 성분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H: 5.0 이상 7.5 이하</li> <li>(2) EC(dS m<sup>-1</sup>): 2.0 이하</li> <li>(3) 모래 함량(%): 70 이하</li> </ul> </li> </ul>
순환 토사 사용 기준	<input type="checkbox"/> 경작용 농지에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 불가</li> </ul> <input type="checkbox"/> 경작용 농지 외에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 불가</u></li> </ul>	<input type="checkbox"/> 경작용 농지에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li> <li>○ <u>토양오염 성분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u></li> <li>○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 불가</li> </ul> <input type="checkbox"/> 경작용 농지 외에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li> <li>○ <u>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사용 제한 규정 예외</u></li> </ul>
기타 사용 기준	(신 설)	<input type="checkbox"/>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토사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li> <li>○ 경작용 농지에는 사용 불가</li> </ul>

시행일 : 2025년1월3일부터 시행

- 토양오염 성분기준 중 pH 기준의 경우 '25.7.3일부터 적용